##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851

발의연월일: 2021. 7. 30.

발 의 자: 박상혁 · 민형배 · 임오경

어기구 • 이정문 • 박 정

서삼석 · 안호영 · 이동주

최인호 · 서영석 · 임종성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체재활용업자의 금지 행위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무등록업자가 자동차의 해체와 관련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말소된 자동차 중 일부를 수출하 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업 역에 관한 사항임에도 현재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가 물에 젖

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반드 시 폐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침 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등 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 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사업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사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및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등).
-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제2호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

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안 제58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대행을"을 "대행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을"로 한다.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 중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중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한다.

- 다.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마. 제58조제5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호를"로 한다.

제80조제5호의3 중 "제57조제3항제2호를"을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 로 한다.

8의2. 제58조제5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제25호의3 및 제2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3호의2 중 "제26조의2를"을 "제26조의2제1항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9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	
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u>대행을</u> 업으로 하는 것을 말	<u>대행과 말소등록된 자동차</u>
한다.	의 수출을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생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
	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u>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u>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 ③ (생 략)	금지 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 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 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신 설>

-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생 략)
  -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다.
  - 1. (생 략) <신 설>

차 대상 자동차 또는 제53조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 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 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 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

-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 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 3. (생략)
- ⑥ ~ ⑧ (생 략)
-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13. (생략)
  -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u> 동부덩으도 성하는 상시를 누</u>
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
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u>것</u>
2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10 (=1 =1 =1 =1 0)
1. ~ 13. (현행과 같음)
14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u>다.</u> (생 략) <신 설>

라. 제5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생략)

15. · 16. (생략)

② ~ ⑤ (생 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략)

14의2.제57조의2를위반하여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아닌자가영업을목적으로폐차

다.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u>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u>
고를 한 경우
<u>라.</u> (현행 다목과 같음)
마. 제58조제5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
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
<u>니한 경우</u>
<u> 바.</u>
<u>-</u>
동차의
사. (현행 마목과 같음)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 1. ~ 14. (현행과 같음)
1. 14. (년 8의 달음) 14의2. <u>제57조의2제1호를</u>
11-   20. <u>/ 川OT 中                                  </u>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 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5. ~ 19.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략)

5의3. <u>제57조제3항제2호를</u> 위반 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자

6. ~ 8. (생 략) <신 설>

9. 제5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u>자동차</u>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10.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15. ~ 19. (현행과 같음) 180조(벌칙)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u>제57조제3항제2호</u>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6.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58조제5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자동차의
10. (현행과 같음)
   81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 략) <u><신 설></u>

<u>25의2.</u> · <u>25의3.</u> (생략)

26. ~ 28. (생 략)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3의2. <u>제26조의2를</u> 위반하여 폐 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 ④ ~ ⑥ (생 략)

<u>.</u>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57조의2제2호를 위반
하여 표시 · 광고를 한 자
<u>25의3.</u> • <u>25의4.</u> (현행 제25호의
2 및 제25호의3과 같음)
26. ~ 28.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6조의2제1항을
4.•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